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2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송도호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우형찬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 이종배, 이종태, 임춘대, 채수지, 최민규, 허 훈, 홍국표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역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·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3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(자치구 지역축제 지도·감독)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·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.

1.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
2.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
3.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619 488 790 526"><신 설></p>	<p data-bbox="821 488 1452 929">제53조(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·감독)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·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data-bbox="853 952 1452 1400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853 952 1452 1131">1.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<li data-bbox="853 1153 1452 1265">2.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<li data-bbox="853 1288 1452 1400">3.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